

청약안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 확인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에 거주(장기복무군인제외)중 이신가요? -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이 있으신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경과 및 연체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셨나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나요?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 있으신가요?(태아, 입양, 전혼자녀 포함)
무주택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해당되는 분
자산 및 소득 요건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을 충족하시나요? ※ 자산 및 소득 요건의 상세한 사항은 별도 페이지 확인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120% 이하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
 ※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해당 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항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 미성년 자녀수	40	5명 이상	40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2) 영유아 자녀수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6)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